543

설비이설계약서

삼성전자주식회사(이하 "갑"이라 칭함)와 <u>주식회사 아토</u> (이하 "을"이라 칭함)는 다음과 같이 설비 이설 계약(이하 본 계약이라 칭함)을 체결한다.

- 다 음 -

제 1 조 [목 적]

본 계약은, "갑"이 보유한 본 계약 제2조의 대상 설비에 대하여 "갑"이 이설을 요청할 경우 "을"이 최선을 다하여 실시함으로써 생산 효율 극대화에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계약대상설비]

"갑"이 소유하고 있는 <u>CVD</u> 공정의 <u>ATTO MAHA-200, CANON APT-5600/6000</u> 설비로 한다.

제 3 조 [계약기간]

- 3-1.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3-2. 계약기간 만료 시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의 연장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- 3-3. 본 계약 체결 이전 발생한 이설 비용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.

제 4 조 [계약금액]

- 4-1. 작업범위: 이설 작업 전 사전검수, 설비 해체, 이설, Set-Up 및 사후 검수까지로 한다. 단, 라인간 이설 시 운반작업은 "갑"이 진행하며, 비닐 포장비는 "을"이 부담한다.
- 4-2. 작업주체: 이설 작업은 "을"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"갑"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.
- 4-3. 이설비용
 - ATTO MAHA-200, CANON APT-5600/6000
 - 해체 및 포장

₩6,000,000/대

제 5 조 [기술서비스의 제공]

5-1. 작업자의 자격

- 1) "갑"의 작업현장으로 파견하는 "을"의 작업자는 교육 및 연수기간을 포함한 실무경력이 신입 사원은 2년, 경력사원은 1년 이상인 자라야 하며 자격이 미달되는 작업자는 설비 이설작업 인원에서 제외한다. 단, "갑"과 사전에 협의된 인원에 대해서는 이설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.
- 2)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"을"은 "갑"의 사업장에 파견하는 작업자의 이력서 또는 재직증명서를



제출하여야 한다.

5-2. 대응시간

"을"은 "갑"이 요구하는 일정 기간 내에 설비가 이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토록 하며, "갑"은 "을"의 원활한 이설작업의 수행을 위해 최소한 1주 이전에 이설계획을 을에게 통보한다.

5-3. 보증사양

- 1) "을"은 "갑"이 사전검수에서 점검한 장비 상태를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"갑"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- 2) 작업 종료의 기준은 설비 이설 전 합의 사양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.

5-4. 작업보고서의 제출

"을"의 작업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"갑"의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득하여 야 한다.

이 때 작업보고서에는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그리고 준비작업시간, 작업자명, 담당자명을 구분하여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.

5-5. 하자보증

작업완료 후 이설 전 합의사양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, "을"은 "갑"과 합의 하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 6 조 [대금청구 및 지급]

- 6-1. "갑"의 대금지급 규정에 준하여 작업 검수 완료 후 대금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.
- 6-2. "을"은 대금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) 대금청구서
 - 2) 작업보고서
 - 3) 거래명세표 (필요시)
 - 4) 세금계산서
 - 5) 기타 "갑"이 요청하는 서류

제 7 조 [의무 및 책임]

- 7-1. "을"은 기술서비스를 제공 중 "갑"의 의문사항에 대해 최선의 답변 및 문제해결을 하여야 한다.
- 7-2. "을"의 실수로 장비 및 부품을 파손시키거나 설비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"을"의 책임하에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7-3. "갑"은 "을"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고장 현상을 자세히 전달해야 하며, 그 내용이 대외비일 경우는 "갑"의 보안규정에 준한다.
- 7-4. "을"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"갑"의 기술 서비스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
 - 1) 전쟁, 천재지변 등의 불가 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 - 2)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, 정부의 지시에 의하는 경우



제 8 조 [보안 책임]

"을"은 "갑"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진다.

제 9 조 [안전 책임]

- 9-1. "을"은 "갑"의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.
- 9-2. 설비를 수리 중에 "을"의 안전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적/물적 책임은 "을"이 진다.

제 10 조 [계약의 해지]

- 10-1. "갑" 또는 "을" 양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1)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
 - 2)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,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
 - 3) 파산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
 - 4) 가압류·가처분 등으로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
- 10-2. "갑" 또는 "을"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두고 이를 최고한 후,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서면 통지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제 11 조 [계약의 양도]

쌍방간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책임 권한 및 채권을 제 3차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.

제 12 조 [분쟁 및 조정]

- 12-1.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
- 12-2.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"갑"과 "을"의 상호 협의 하에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해결한다.

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 서명 날인하여 "갑"과 "을"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7년 3월 일

갑: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見통 (16 대표이사 윤 종 용 (印)

을: 주식회사 아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-1 2다 302 대 표 장 호 승 (印)



